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 포함 >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6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 포함	2
※ 참고자료	8
1.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요	8
2. 하천점용 업무처리 세부절차	9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4일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을 정비·보전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용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시민이 보행용 징검다리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등).

Ⅲ. 검토의견

1.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 포함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시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보행자용 도하(渡河)시설의 설치</u>
<u>6.</u> (생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 -----.

1. ~ 4. (생략) <u><신설></u> ④ ~ ⑨ (생략)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 ----- ----- ----. ----- ----- -----제7호-----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부분 하천구역¹⁾, 소하천구역²⁾으로

1) 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6. (생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지정되거나 공유수면³⁾으로 국유지·공유지에 해당하고, 그 중 하천구역 안에서 ①토지의 점용, ②하천시설의 점용, ③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⁴⁾의 허가⁵⁾를 받아야 함.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하천기본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⁶⁾,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⁷⁾.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시설(공작물)의 설치(신축·개축·변경 등)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자용 도하(渡河)시설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설치와 운영 시 안전성 확보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4)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현행 법령상 고려해야 할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징검다리 등 도하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⁸⁾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⁹⁾.

실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징검다리 보행 중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중학생 1명이 사망한 사고('25. 10.)¹⁰⁾와

8) 「건설산업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9)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 강화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365TIMES, 2025. 11. 15.

전북 순창군 섬진강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밧을 헛디더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25. 12.)¹¹⁾ 등은 하천의 징검다리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이 집중호우 이후 수위 상승, 미끄러짐 위험, 구조물 안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면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시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천구역 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안전성을 검토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위험 징후가 보이는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하천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행용 도하시설은 현행법 제33조제1항제3호¹²⁾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관리 중이며¹³⁾¹⁴⁾,

10) '잠긴 징검다리' 통제 왜 안 됐나...MBN뉴스, 2025. 10. 14.

11) 징검다리 건너다 하천 빠져 사망...유족 "불안정한데 조치 안 해", 연합뉴스, 2025. 12. 24.

12)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3)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1조(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하 "공작물 설치"라 한다)의 점용이란 하천구역에 수문, 제방 등의 하천시설이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는 점용에 해당한다.

14)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행자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수 시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법률은 포괄적으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행정규칙에서 보완하는 것이 법체계 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1.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것
- 1의2. 하천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13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시설과 하수도 등 방류시설은 그 설치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할 것
- 1의3.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은 방류에 따른 하천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 공작물의 설치 등에 있어서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3. 수문 및 통문, 교대(橋臺) 등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가 필요한 공작물 등의 설치에 수충(水衝)부 등이 아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할 것
4. 교량, 하구둑 등 하도 안에 설치하는 공작물 및 계획제방 부지 안에 설치하는 수문·통문 등의 설치에 기존 시설에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5.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그 상공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할 것
6. 설치가 부적당한 장소에 불가피하게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모형실험·수치해석 등에 의해 국소 세굴, 하도의 안정, 설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도록 할 것
8. 공작물(공사 시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에 부근의 토지에 대한 경관과의 조화, 하천 생태계의 보전 등 하천환경이 보전되도록 할 것
9. 공작물 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는 그 공작물이 치수·이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거할 것
10. 공작물 설치구간에 지하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것
1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실시설계완료 후 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참고 1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요¹⁵⁾

□ 하천점용허가 정의

- (허가대상)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 (기본원칙)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치수·이수 및 하천 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

□ 점용허가 주체(하천법 제33조,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사목)

국가하천		지방하천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점용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 하천 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선박의 운항 등	전 체
국가(유역·지방청)		지자체(시·도지사)

□ 점용허가 검토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고려사항 (법 제33조제3항)	○ 하천의 구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 침수방지 배수시설 설치 여부 ○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금지사항 (법 제33조제4항)	○ 맹독성 농약 또는 비료 사용한 농작물 경작 ○ 하천 및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골재채취 ○ 가축의 방목, 사육 ○ 콘크리트 등 사용한 고정구조물 설치
기본원칙 (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 공공의 복리 증진과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 허가 ○ 하천의 이·치수상 지장이 없을 것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 하천 및 주변의 자연·사회적 환경훼손 없을 것

1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2

하천점용 업무처리 세부절차¹⁶⁾

절차	근거	주요내용
사전협의	-	- 점용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 - 하천점용허가의 기본 원칙 고지 / 신청서, 구비서류 안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신청인 정보·점용개요 등을 기재해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점용허가 심사를 위한 첨부서류 제출(시행규칙 별표4) - 반려,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		
서류접수 및 검토	-	기술심사 진행 전 서류검토를 통해 추가 조치 예) 하천점용허가 기본원칙 부합 여부(반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불충분(보완) 등
↓		
기술심사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시행령 제34조제3항	- 허가 시 사회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실시(시행령 제34조 제3항) - 점용행위에 대한 하천관리의 영향, 사회·자연·환경·지역발전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기술심사서에 검토의견 기입, 허가/ 보완/ 반려/ 불가 판정
↓		
하천점용허가 결정	-	- 첨부서류 및 기술심사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 결정 -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나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법 제33조제2항)
↓		
허가증 교부 및 허가대장 작성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허가 시 점용허가증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허가 내용을 제31호 서식에 따라 허가대장 관리 - 피허가자에게 점용료 납부방법, 원상회복비용 예치, 사후절차 등을 안내
↓		
허가사항 고지 및 통지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 해당 지자체에 허가내역 통지(법 제33조제9항, 국가하천의 경우 유역환경청에 의해 점용허가가 된 경우에도 유지·보수 업무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므로 해당 시·도에서 허가내역을 고시하도록 요청) - 관보 또는 공보에 하천점용허가 내용 고시(시행령 제38조)
↓		
사후관리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시행규칙 제19조의 2인 경우 제외), 토지의 굴착·성토·절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6)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